제821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방송통신설비 면진장치의 성능 기준(신설) o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를 시험하기에 적합한 국제표준으로 미국토목학회의 비구조요소 진동대 시험기준(AC 156)을 수용 o '19년, '20년 정책연구과제 수행내역과 시험기관의 시험내용 분석 o 국제표준과 국내 건물의 지진특성을 반영한 층응답스펙트럼기준(0.5 ~ 33.3 ㎐) 마련 - 면진장치의 설치조건, 성능검증방법, 판정조건 등 규정 ※ 지진발생시 앵커링 등의 수단으로 하부를 고정한 통신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는 주로 2~11 ㎐에 분포하고 면진장치를 하단에 시설한 통신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는 주로 0.5~1.0 ㎐에 분포함 현 기술기준은 1~35 ㎐주파수의 영향을 검증하도록 정하고 있음	1.비중요
2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교육부)	1.임원과 친족 교직원 공개 방법(신설)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공개	1.비중요
3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 기준(신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시설기준 구비 2.회수 대상 화장품 범위 확대(강화) 식품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 화장품에 추가하고 위해성 "나"등급을 부여함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행정처분 기준(강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소비자용 화장품의 임의 혼합, 소분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음성녹음 이외의 방법으로 증거자료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방법을 확대 (신설)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음성녹음 이외에 음성봇,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 확보	1.비중요
5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1.절수 등급 표시 기준 추가 및 절수설비 물 사용량 측정방법 단일화(신설) 절수형 수도꼭지의 절수등급 표시 기준 추가 및 절수설비의 물 사용량 측정방법 규정	1.비중요
6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1.기회균형선발 의무모집 비율(신설) 대학에 차등적 교육기회 보상을 위한 입학전형(기회균형선발)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의무화 함 2.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선발방식(신설)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 관련 입학전형(지역균형선발)을 운영하려는 경우, 그 선발 방식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자격으로 하고 고교 교과 성적을	1.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우대하여 선발하도록 권고함	
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청)	1.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신청(신설) 해양경찰장비에 도장 및 표시를 하고 해양경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가 동일 혹은 유사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본문) 다만 해양경찰청에서 운용하는 불용장비를 관리전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사용중인 경우 중 해양경찰청의 안전 및 수색구조, 해양요염방지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 해양자율방제대 등에 도장, 개조 등의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같은 법 제20조제3항단서 및 시행규칙안 제8조).	1.비중요
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개정안 (소방청)	1.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제7조제4항 및 별표 1 1 비고(강화)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그림 병기)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함의 내·외부에 붙여야 한다. [별표 1] 1. 내화배선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 표준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건설기계 폐기 부품 추가(강화) 차대번호가 새김된 틀을 건설기계 폐기 부품으로 규정 2.정기검사 부적합 사유 추가(신설) 등록번호표 미봉인, 와이어로프 불량, 제출서류와 상이한 장비 등에 대한 명확한 검사 부적합 기준 마련 3.검사대행자 제재처분 기준(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 위반횟수별 처분 기준 마련 4.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 지정 요건(강화) 강의실 면적, 이론교육 강사 및 조종실습 강사 인력 기준 등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 요건을 규정 5.검사대행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강화(강화) 초음파두께측정기, 전류측정기 등 검사 필수장비를 구비하고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검사원 경력을 강화하도록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장례식장 영업자의 계약내용 미설명 시 행정 처분 기준 마련(신설) 장례식장 영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가 계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1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1.행정처분의 기준(강화)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월평균 부당금액 40만원 이상부터 부당비율은 0.1이상~0.5%미만부터 구간별로 적용	1.비중요
12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금융회사의 해외상장법인 주식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요구(신설)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면제 등 (안 §3④1호나목) - (기존) 예외없이 금융보험업 외 해외직접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 (변경) 해외직접투자 대상 중 상장된 법인의 경우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을 면제하되, 건전성, 법률, 경영리스크가 예상되는 사유에 한하여 동 사유 발생시 감독원장이 제출 요청 가능	1.비중요
1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경찰청)	1.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및 규제의 재검토 기간 설정(신설) 1.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 기준을 정함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위 신설규제 관련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재검토 기간을 설정함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수소충전소 압축가스설비의 변경사항을 변경허가대상 및 검사대상에 포함(신설) ㅇ수소충전소 최초 설치 이후에 압축가스설비의 위치, 수량 또는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 ① 압축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수량 및 용량의 증가 → 지자체 변경허가 得 및 검사기관의 검사 수검 ② 위치변경 또는 수량 또는 용량의 증가 없는 단순 교체 → 검사기관의 검사 수검 2.수소충전소의 시설기준 강화(신설) ㅇ①수소충전소의 안전성 평가, ②방호벽 설치대상 확대, ③배관 시공자 기준 강화하는 충전소 시설기준 개정 ① 입지여건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② (현) 사업소 밖 보호시설 → (개정) 기존 + 사업소 안 보호시설 ③ 수소충전소 배관은 배관시공 양성교육 이수자만 시공 가능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교육 과정 신설(신설) o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 및 전문화를 위해 양성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을 추가 * 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부여 ** 선임된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무 교육(신규선임 및 3년주기 재교육)	
1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1.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사항(신설) ①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 ②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 ③ 앱 마켓사업자의 민원전달 및 회신 ④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시 이용자보호 ⑤ 앱 마켓사업자의 자료제출 요청 2.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강화) o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금지 세부유형(안 제8호) o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구체화(안 제9호) o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구체화(안 제10호) 3.자료 또는 물건의 재제출명령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신설) o 하루 평균매출액 산정 방식(안 제43조의2제1항) o 하루 평균매출액 규모에 따른 부과비율(안 제43조의2	1.비중요 2.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제2항 및 별표 7의2) o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사전 통지(안 제43조의2제3항~제4항) o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설정(30일이내), 재제출명령 계속 불이행시 매 30일마다 이행강제금 징수, 미납부시 독촉 및 징수방법 등 마련(안 제43조의2제5항~제8항) o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제43조의2제9항)	